##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7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허종식 · 윤준병 · 김교흥

어기구 · 강준현 · 문대림

유동수 • 박홍배 • 이연희

정일영 · 노종면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가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주기를 명시하고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경우에도 매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률 제 호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하여야 한다"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	제7조(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		
선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	선 실태조사) ①		
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			
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			
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			
태조사"라 한다)를 <u>하여야 한</u>	<u>매년 정</u>		
<u>다</u> .	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u>공표하여야 한다</u>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그 밖에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